

문서번호	건설관리과-58 5
결재일자	2016.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보도여부	

주무관	가로정비팀장	건설관리과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김인혜	강형배	유영채	01/12 김희동
협 조			

-2016년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도상 불법적치물 단속운영 계획

2016.1.12.

강 북 구
(건설관리과)

2016년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도상 불법적치물 단속운영 계획

무질서한 보도상 적치물로 인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있어 보도상 불법 적치물에 대한 집중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걸어서 길거리를 왕래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 생각하는 보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1. 관련 근거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1항
-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제2항 2호

2. 추진 방향

-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 생각하는 보도문화 정착
- 보도상 적치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확산 및 자진정비유도

3. 추진 개요

- 기 간 : 2016. 01. ~ 계속
 - 홍보 및 계도 기간 : 2016. 01. ~ 2016. 03. 31.
 - 집중 단속 및 정비 기간 : 2016. 04. 01. ~ 2016. 12. 31.
- 인 력 : 12명(가로정비팀 직원 9명, 민간용역원 4명)
- 중점 단속 대상
 - 보차도의 구분이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통행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이면도로

- 보도폭이 좁은 도로구간 점포의 상품 과다적치 지역
- 민원다발 점포 및 상습·반복적치 점포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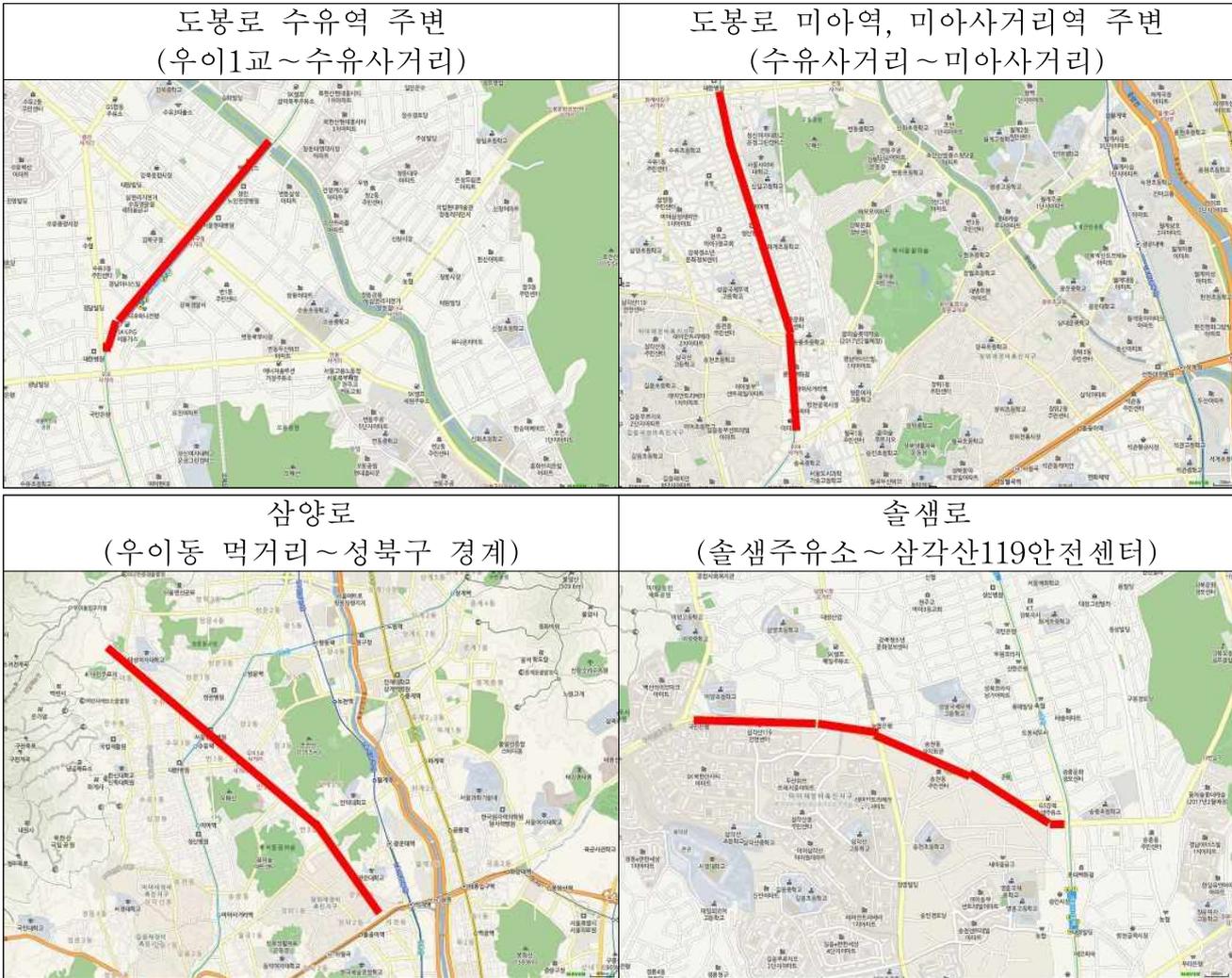
- 점포주에 대한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통한 보도상 적치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 확산 및 자진정비 유도
- 경미한 적치행위 : 현장에서 계고를 통해 즉시 제거
- 과다적치 및 반복적치 행위 : 과태료부과 및 강제정비

4.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홍보 및 계도	2016.01. ~ 2016.0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2회 이상 순찰을 통한 홍보 및 계도 - 자율정비 계도 안내문 배포 - 보도를 과다 침범한 적치물의 경우 계고장 발부 등 강력정비 안내 - 상습, 반복 적치물의 수거 및 과태료 부과 안내 · 구두계고 및 계고장 부착(전달 포함)이후 반복적 적치 행위는 과태료 부과 · 계고장 부착(전달)과정 사진촬영으로 자료 확보
집중(강력)단속	2016.04.01. ~ 201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단속 - 경미한 적치물은 현장에서 계고를 통해 즉시 제거 - 상습적, 반복적으로 적치할 경우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LR A[구두계고 (적발 즉시)] --> B[계고장 부착 및 전달 (사진촬영)] B --> C[강제수거 (창고보관)] C --> D[수거품 반환 (과태료부과)] </pr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두계고, 계고장 부착(전달), 수거, 과태료부과 등 실적은

	<p>당일 전산(도로점용관리시스템)입력</p> <p>※ 구두계고는 1회에 한하여 계고하고 차후는 계고장 전달</p> <p>※ 계고장의 이행기간 : 10일 이상 명시</p>
--	---

○ 주요 단속 구역도



5. 향후 계획

- 지속적인 순찰을 통한 보행권 확보
- 불법 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고발) 및 강제수거 조치

보도상 불법적치물 자율정비 협조 안내문

평소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으로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점포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걸어서 거리를 왕래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 생각하는 보도문화 정착을 위해 보도상 각종 적치물 정비를 통하여 보행자 친화적인거리(보행자 보행권 확보)를 만들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솔선수범이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걸을 수 있고 청결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원천인 만큼 점포주 여러분께서는 보도상 불법 적치물을 자율 정비하여 구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불편해소는 물론 도심과 어울리는 가로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상 상품 적치 안하기(점포 안 상품 진열)

점포주 준수사항

※ 자율정비를 위한 구두계고 및 안내장 전달 후에도 반복적으로 도로에 상품 적치행위가 이뤄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 1㎡이하 100,000원
1㎡넘는 초과1㎡마다 100,000원 추가

❖ 문의 : 가로정비팀 ☎901-5823



강북구 건설관리과

